고시 제2016-34호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제1항 중 "「상법」제370조제1항"을 "「상법」제344조의3제1항"으로 하고, 제5조의4제4항제1호 중 "제9조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"를 "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"로 한다.

제5조의5 중 "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2호"를 "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제2호나목"으로 한다.

제5조의6제2항 중 "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"을 "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 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 득현황"으로 한다.

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8(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 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"란 다 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.

- 1. 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일 것
- 2.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
- 3. 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

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고 있을 것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) 법 제46조제2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부수업무 신고의 예외)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"란 <별표1의3>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7조의2를 삭제한다.

제24조의9제2항 중 "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"를 "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"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, 금융이용 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.
- 8. 약관의 제·개정 절차, 관리방법,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·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"제25조"를 "제61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제12조"를 "제26조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"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"를 "법 제24조제6호"로 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,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약관의 개정 등)

- ① 법 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"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기존 금융약관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
- 2.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·부도·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
- 3. 법령 및 고시의 제·개정에 의해 약관을 제·개정하는 경우
- 4.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법 제 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
- 5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
-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(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, 법 제54조의 3 제5항 내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1.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
- 2.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

- 3.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- 4.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
- 5.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
-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통지한다.
-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5(광고 등) 시행령 제19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받고 동 회원에게 사망, 질병, 실업, 자연재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(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한 채무에 한함)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29조를 삭제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제21조제6호"를 "제21조제7호"로 하고, 제37조제1항 중 "제23조의2"를 "제23조의3"으로 하며, 제37조의2제1항 중 "제23조의2"를 "제23조의3"으로 한다.

별표1의3의 제목 중 "제7조의2제2항"을 "제7조의2"로 하고, 제1호가목을 "통신판매 및 여행업"으로 하며, 다목, 차목, 및 카목을 삭제하고, 하목 중 "제7조의2제5항"을 "시행령 제17조의2제2항"으로 하며,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"제7조의2제5항"을 각각 "시행령 제17조의2제2항"으로 하고,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"제7조의2제5항"은 "시행령 제17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
별지 5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6조제 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출업무 영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5호]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수업무 신고서

부수업무 신고서

문서번호 20 . . .

수 신: 금융감독원장

참 조:

사본수신: 0000(0000)

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를 신고합니다.

- 1. 부수업무의 내용
 - 가. 목적 및 내용
 - 나.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
 - 다. 영위방법
 - 라.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
 - 마.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 · 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
- 2. 부수업무의 영향분석
 - 가. 여신전문금융업과의 관련성
 - 나. 여신전문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
 - 다. 금융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
 - 라.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
 - 마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□ 첨부서류: 당해 부수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음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

○ ○ ○ 대표이사 (인)

본점 소재지:

작성자: (직위)

전화번호: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4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	제5조의4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
도 초과승인) ① 금산법 제24조	도 초과승인) ①
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	
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<u>「상</u>	
법」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	법」제344조의3제1항
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	
발행주식을 말한다.	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금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	4
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(제200	
24호; 2007.4.26) 제2조제1항제5	
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	
고시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의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	
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	
를 말한다.	
1.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	1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	
관한 법률」 <u>제9조제18항제7</u>	<u>제</u> 9조제19항제1호
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	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
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	<u>투자기구</u>
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	
유하는 경우	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제5조의5(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하는 주주의 지정)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여신 전문금융회사의 주주가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제5조의6(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5조의6(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) ① (생 략)
 -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 ② ------ 법 제49 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현황을 감독원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~ ④ (생 략) <신 설>

제	[5조의	5(사	실성	남의	영향	척을	행시	}
	하는	주주	의	지정])			_
								_
								_
						「금	· 융호	<u>[</u>
	사의	기배	구3	<u> </u>	관한	법	를 스	.]
	행령_	」ズ]4조	:제2	호나	<u>국</u>		_

- 등) ① (현행과 같음)
- 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 한 신용공여<u>현황 또는 법 제50</u> 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 식 취득현황-----
 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- 제5조의8(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"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.
 - 1. 해당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 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 사일 것
 - 2. 해당 계열회사의 발행 주식 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

제6조(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) 제6조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) 신용카드업자는 법인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. 다만, 법인신용카드 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한 경우 해외에서의 현금융통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<신 설>

제7조의2(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 무) ①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" 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.

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46

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

3. 해당 계열회사와 여신전문금 융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가정 할 경우 주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준수하고 있을 것

법 제46조제2항에서 "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비율"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
제7조(부수업무 신고의 예외) 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"란 <별표1의3>에 해당하는 업무 를 말한다.

<삭 제>

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인력·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5호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<별표 1의3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.

-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 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1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 전성을 저해하는 경우
- 2.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

 초래하는 경우
- 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
- 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 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- ①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

한다.

- 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신 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.
- 1.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
- 2. 소유하고 있는 인력·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한 업무의 신고일
- 3.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
- 4. 신고한 업무의 내용
-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.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 다.
- ⑧ 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매출액이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수익·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- 1. 가맹점수수료 수익
- 2.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
- 3. 연회비 수익
- 제24조의9(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) ① (생 략)
 -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없다.
- 제25조의3(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.
 - 1. ~ 2. (생 략)
 - 3. 「부가가치세법」 <u>제25조</u>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신용카드가 맹점
 - 4. 「부가가치세법」 <u>제12조</u>에

제24조의9(카드이용 대	금에 대한
이의제기 절차 등) ①) (현행과
같음)	
②	
	<u>「신용정</u>
보의 이용 및 보호에	관한 법
<u>률」 제25조</u>	
제25조의3(가맹점 단체	설립 기
준) ①	
1. ~ 2. (현행과 같음	
3	<u>제61조</u>
	2000-
4	<u>제26조</u>

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당시 직전 년도의 「소득세법」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5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에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당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

② ~ ④ (생 략)

드가맹점

제26조(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)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·운용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	-
	-
	-
	-
	-
5 <u>제26조</u>	-
	-
	-
	-
	-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제26조(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	
준) ① <u>법 제24조제6호</u>	-
	-
	-
	-
1. ~ 6. (현행과 같음)	
7.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	-
경우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	2
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	<u>-</u>
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	_
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이	=
<u>한다.</u>	
8. 약관의 제·개정 절차, 관리빙	-
법,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	-

② 신용카드업자는 <u>법 제24조</u>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사항을 약관에 규정하 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 <신 설>

약관	의	작성·운	-영에	관한	7]
준을	って	하여야	한다.		

②	<u>법</u>	제24조
<u>제6호</u>		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약관의 개정 등) ① 법
제54조의3제1항제5호에서 "금
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
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
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기존 금융약관의 명칭만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경우
- 2.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휴업·부도·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
- 3. 법령 및 고시의 제·개정에 의해 약관을 제·개정하는 경우 4.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 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

- 등이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
- 5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 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
- ② 감독원장은 법 제54조의3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 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에 신고수 리하거나 변경명령하여야 한다 (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 는 기간, 법 제54조의3 제5항 내 지 제7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협의에 필요한 기 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신고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1.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필요한 경우
- 2.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

- 3.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경우
- 4.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

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

 매우 높은 경우
- 5.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오
-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약 관을 수리하거나 변경명령하는 경우 해당 수리사실 및 변경명 령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여신 전문금융회사등 및 여신전문금 융업협회에 통지한다.
-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 고 받은 약관을 10영업일 이내 에 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법 제54조의3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받은 여신전문금융 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

제26조의2

제26조의3

<신 설>

제29조(등록사항 변경) ① 외국환
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
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
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
내영업소를 신설·폐지하거나 주
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
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
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
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

<u>회는 동 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</u> 정 또는 보완하고 이를 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3(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) (현행 제26조의2와 같음) 제26조의4(정보기술부문 및 전자 금융업무에 관한 기준) (현행 제26조의3과 같음)

제26조의5(광고 등) 시행령 제19 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19조의 15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신용카드회원으 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 에게 사망, 질병, 실업, 자연재 해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(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 한 채무에 한함)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업무를 말한다.

<u><삭 제></u>

제31조(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 제31조(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 부관리)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부관리) ① -----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, 거 액신용위험, 파생금융거래위험, 시장위험, 환율변동위험 등 외 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 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 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 략)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37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 ① 법 제37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 ① --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 ----- 제23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 의3-----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(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대주주거래 현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감독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② ~ ③ (생 략) 제37조의2(주요 변경사항의 보고) 제37조의2(주요 변경사항의 보고)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 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

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에는 시행령 제19조의17 및 <u>제2</u>

3조의2에 따라 사유발생일부터

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

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			
연 락 처	(02) 2100 - 2992			